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I. 개정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II. 주요골자

- 사회복지관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을 폐지함 (안 제6조)
- 이용료 납부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안 제7조)
-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사유는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안 제12조)

III.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 그러나 조례안 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3호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와 5호에 “기타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용제한은 외관상 판단이 어려우며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삭제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사회복지관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중 중립성의 원칙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6조 4호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 1호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 납부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개정은 2000. 10. 1일자 생활보호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11조 제1항 2·3·4·5호의 규정은 위·수탁협약서와 중복된 내용이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 후 협약서 상에 규정된 내용이 준수되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